

학대 신고 대응에 있어 안전한 교회 자문단 조사과정 지침

Guidelines for Safe Church Panel Process in Response to an Abuse Allegation

1. 정의

- a. 교회 지도자: 교단 소속 교회 및 노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정의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단 교회나 노회는 일반 배상 책임이나 기타 보험 적용 범위와 일치하는 선에서 교회 지도자를 정의할 수 있다.
- b. 부정행위: 캐나다 각 주와 미국 50개 주는 저마다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아동 신체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성희롱, 폭력, 강간을 포함한 성인 대상의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 2-4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교회법 절차에서는 법적 기준으로 개인의 죄를 판결할 수 없다. 민사 또는 형사상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 당국뿐이다. 그러므로 교회법 절차로는 법으로 정의된 아동학대나 강간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불경한 행위, 권력 남용, 영적 권리 남용, 성적 부적절한 행동, 직무 태만과 남용에 대해서는 교회법 절차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민법이나 형법 위반이 아니므로 형사 기소나 민사적 교정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의 신뢰와 안녕을 침해하고 가해자가 맡은 직위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다음 정의들은 불경한 행위, 권리 남용,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등의 유형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다:

1. 신체적 부정행위: 신체적 부정행위란

- 미성년자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인에게 가해지는 위협적인 상해나 우발적인 상해, 또는
- 성인이 저지른 불쾌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접촉을 의미한다.

신체적 부정행위는 때로 한 번의 사건이지만, 많은 경우 미성년자나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만성적 패턴이다.

Phone: (800) 272-5125

Email: safechurchministries@crcna.org

Website: crcna.org/SafeChurch



2. 성적 부정행위: 성적 부정행위란

- 성적 접촉, 성행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상황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나 성인을 착취 또는 길들이는 행위이며, 그 결과 성적 만족이나 그 대상에 대한 권력 및 통제를 얻는다.
 - 동료 또는 동료 자원봉사자 간의 원하지 않은 접촉, 성행위 또는 정서적 친밀감, 또는
 -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성적 접촉, 성행위 또는 정서적 친밀감 등을 말한다.
3.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어느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거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고 조종하는 행동 패턴이다. 정서적 학대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안전, 재산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
 -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격리
 - 명예훼손, 괴롭힘, 비하, 수치감 또는 굴욕감을 주는 행위
 - 끊임없이 비판
 - 사람을 감정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

2. 고소인이 성인인 경우, 교회 지도자에 의한 학대 신고 대응

본 지침은 (1) 고소인이 성인일 때 혹은 (2) 고소인이 성인이 되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학대 혐의를 신고했을 때 따라야 할 절차이다.

- a. 고소인은 안전한 교회 사역부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변호인 역할을 해 줄 노회 안전한 교회 사역팀에 연락한다. 변호인은 증인 및 증언 수집을 도와주고, 고소인과 함께 자문단 조사과정에 참석하며, 다른 교회 기관들에 앞서 고소인을 옹호함으로써 고소인을 도울 것이다.
- b. 변호인은 학대 혐의를 피고소인의 교회 집행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상임) 위원회의 위원 또는 안전한 교회 사역부(팀) 팀장에게 알린다. 이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이 적힌 서면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집행위원은 안전한 교회 사역부 팀장에게 (또는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변호인의 연락에 대해 고지한다. 집행위원(또는 위원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및 당시 알려진 혐의를 확인한다.
- d.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나 카운실, 고소인의 변호인, 교회의 안전한 교회 사역부 담당자 또는 노회의 안전한 교회 사역부 조정자 및 교회 방문단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혐의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¹ 일반적으로, 그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혐의 조사를 마칠 때까지 편견 없이 피고소인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 60분 분량 안전한 교회 사역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적법한 절차 및 학대 인식,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²
 - 최소 다음 절차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 학대 혐의의 심각성과 가능성 조사하는 자문단 조사과정
(교단 안전한 교회 사역부 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¹ 교회 리더에 대한 학대 혐의와 관련된 상황을 다루기 전, 카운실 회원은 교회 방문단과 함께 60분 분량의 안전한 교회 사역부 오리엔테이션과 적법한 절차, 학대 인식과 대처에 대한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안전한 교회 사역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² 이 교육은 안전한 교회 사역부 사역 훈련 비디오 시청 후 토론, 안전한 교회 사역부 대표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대면 교육, 안전한 교회 사역부 직원과 함께 온라인 교육을 받는 등의 여러 옵션들 중 선택할 수 있다.

2. 학대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교단 안전한 교회 사역부는 평판이 좋은 조사관들의 명단을 확보한다). 카운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독립 조사관을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a.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이 지역사회나 그 지방에서 저명한 지도자여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 b. 고발이 다수의 피해자 또는 다수의 관할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c. 공정성을 해치는 이해 상충, 특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요인이 실제 있거나 혹은 인지되는 경우.

3. 지정된 조사팀에 의해 진행되는 내부 조사

- e. 교단 안전한 교회 사역부 직원들은 카운실과 합의한 학대 대응 계획 (즉, 독립 조사관 목록 제공, 자문단 출범, 훈련 및 상담 제공, 그리고/또는 교회 조사 수행 방법에 대한 자원 제공)을 카운실이 실행하도록 돋는다.

3. 자문단 소집

- a. 카운실이 교회 지도자가 벌인 학대 의혹에 대해 자문단 조사과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하면, 카운실 의장은 노회 안전한 교회 사역팀에게 연락해 자문단을 소집한다.
- b. 노회에 아직 안전한 교회 사역팀이 없는 경우, 변호인 또는 집행위원은 가장 가까운 노회 사역팀에 연락해 자문단을 소집해야 한다. 자문단은 소집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피고소인이 CRC 교단이나 산하 기관의 직원인 경우, 자문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RCNA 사무총장이 지명한 기관 대표를 참관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피고소인이 직분자인 경우, 자문단은 피고소인 교회의 노회에서 온 두 명의 교회 방문단을 참관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참관인들은 자문단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조사과정을 지켜본다.
- c. 자문위원장은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과 회합 일정을 잡는다. 이때 자문단이 위치와 시간을 선택한다. 고소인과 증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문위원, 집행위원, 고소인, 변호인, 참관인 그리고 증인은 회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문단은 고소인의 증언에 개연성과 심각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평가한 후에만 피고소인에게 그 혐의를 통지한다.

- d.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고소인, 피고소인의 이름 및 제기된 혐의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고소인과 증인들은 자문단의 모든 조사과정이 끝났을 때 자신들의 증언에 대한 비밀유지를 포기할 수 있고, 이로써 변호인, 자문위원들 및 참관인들은 (아래 섹션 3 참조) 집행위원, 카운실 및 기타 교회 기관에 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다.
- e. 집행위원이 선택할 경우, 대표 2명을 선임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자문단과 만나는 것을 모두 참관할 수 있다. 대표 참관인은 자문 과정 동안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
- f. 자문단은 고소인이 제시한 정보를 받아 서면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증인들에게 질의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한다.

증언은 서면 자료, 증인, 공증 받은 진술서, 선서 증언(선서 하에 작성된 진술서), 이메일 및 기타 전자 통신, 개인 소장의 형태일 수 있다. 거리상 이동이 용이치 않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자문단 소집에 있어 원치 않는 지연이 초래될 경우, 원격 회의 및 기타 보안 통신 방법들이 허용된다.

- g. 고소인과의 면담 후 자문단이 혐의 사실에 대해 심각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하면, 자문단은 평가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고, 자문단은 자문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만약 혐의의 심각성이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자문단은 작업을 종료한다. 자문단 절차가 종료되면 이를 고소인과 집행위원에게 통보한다. 집행위원은 이 문제를 기각하거나 고소인과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참고: 만일 자문단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적절한 권력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그 의혹이 심각성과 개연성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 만큼 카운실은 고소인이 치유되고 회복하도록 목회적 지원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h. 만약 자문단 조사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자문위원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자문단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문단은 피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혐의를 제출한다. 혐의에는 특정 사건,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의 날짜들, 목격자들 명시 혹은 입증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최소 (5) 일 동안 자신과 자문단과의 면담을 준비한다. 피고소인은 현직 혹은 전직 개업 변호사가 아닌 지지자와 동행해야만 한다.

피고소인은 자문단 앞에서 증언한다. 이때 시간과 장소는 자문단이 정한다. 자문위원, 집행위원회, 피고소인, 지지자, 관찰자, 목격자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 i. 자문단은 피고소인이 제시한 정보를 받는다. 그들은 서면 자료, 공증된 진술서 또는 선서 증언의 내용을 조사한다. 그들은 피고소인과 증인들을 면담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한다. 거리상 이동이 용이치 않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자문단 소집에 있어 원치 않는 지연이 초래될 경우, 원격 회의 및 기타 보안 통신 방법들이 허용된다.

피고소인과 증인들은 자문위원들과 대표자들이 카운실 및 다른 교회 부서들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문단 조사과정이 끝날 때 자신들의 증언에 대한 비밀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

- j. 자문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혐의의 심각성과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다. 자문위원들은 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서명한다. 만약 자문단이 피고소인이 비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것을 듣거나, 피고소인의 증언보다 고소인 증언의 사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은 목회적 돌봄과 교회적 징계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 자문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보고서 사본을 보낸다.
- k. 집행위원은 자문단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카운실을 소집해야 한다. 이 모임에서 의장은 먼저 자문단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둘째, 카운실은 고소인(또는 변호인)과 피고소인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만나야 한다. 회의 전에는 고소인(변호인)도 피고소인도 카운실과 만나서는 안된다. 셋째, 대표자들과 카운실이 만난다. 넷째, 교회 방문단이 카운실과 만난다.

- I. 만약 어떤 형태이든 성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이고, 피고소인이 카운실 모임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면, 카운실은 교회 헌법 제82, 83조에 의거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카운실이 안수받은 목사에 대해 징계를 행사해야 할 때, 협력을 위해 이웃교회 카운실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교인들에게도 알린다.

만약 정서적 부정행위나 학대와 관련된 상황일 경우, 자문단은 가해진 피해에 적합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하되,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재활 및 회복을 모두 강구하는 방식으로 직분자의 징계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이 권고안에는 일정 기간 정직, 상담, 권력 남용에 관한 교육 훈련, 멘토링, 회복 연습, 감독 및 책임, 그리고 직분자가 사역에 적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면직 등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 이 권고안은 결코 정서적 학대의 무게를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 정서적 학대가 다른 형태의 학대와 동일한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면직을 시킨다고 해도 정서적 학대를 초래하는 행동의 심각성과 충격으로 인해, 정의와 피해자(들)의 치유, 교회의 안녕이 항상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m. 카운실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혐의를 판단하고 다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카운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판결 내용과 다음 방침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카운실은 사안에 대하여 자체 심리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카운실 비용으로 현직 변호사를 입회시킬 수 있다. 청문절차에 대한 지침은 교회령 제30조 c항 보칙 “권리와 절차에 관한 재판규정” 제2-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 교회 방문단은 학대 혐의에 대한 카운실의 대응에 관한 모든 심의에 참석해야 한다. 심의가 끝나면 교회 방문단은 자문단 조사과정에 대한 소견과 카운실의 응답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보고서는 비밀에 부쳐지며, 교회 카운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고소인, 고소인의 변호인, 피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인에게만 제공된다. 보고서는 노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만 카운실에 제출할 수 있다.
- o. 변호인, 고소인 및 교회 방문단은 의혹이 논의된 이후, 이와 관련한 노회, 교단 재판국, 혹은 총회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p.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카운실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교회헌법과 보칙 제30조에 요약된 표준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노회로 전달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가 범한 학대 혐의와 관련된 제30조 a항 항소가 노회가 열리기 전에 있을 경우, 총회 대리인들은 노회에 조언하여 공정한 절차가 되게 하며 (교회헌법 제48조 c항에 따라)³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보살핌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4. 중요한 다섯가지 사항

- a. 본 지침은 제안하는 것이다. 학대의 상황은 교회 직분자들이 규정에서 벗어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주법은 학대를 정의하는 방식과 신고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각 학대 혐의에 있어 본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특별 관할권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고문을 두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 최선이다. 또한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안전한 교회 사역부 대표와 상의할 수 있다.
- b. 본 지침에서 고소인의 혐의는 특정 시기에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지침에 설명된 절차의 각 단계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및/또는 공개되는 개인은 광범위한 예방 조치들을 사용하여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혹은

³ “다른 곳에서 정해진 의무 이외에, 총회 대리인은, 요청에 따라, 적절한 통합과 질서, 그리고 건전한 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노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회헌법 제48조 c항).

본 지침들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과 관련된 혐의들 및 주변 상황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지침들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혐의 또는 주변 상황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정보 유포는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c. 아동학대나 폭행 혐의의 공개가 정당할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형사법 상의 언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형사 당국이 혐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불경한 행위, 직권남용 등이라면 교회헌법의 언어를 포함하여 교회 관계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는 명시와 함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이어지는 공개에는 교회헌법의 언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폭행(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유의해야 한다. 폭행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계속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축소할 수 있으며, 그러면 문제가 왠지 은폐되고 있다는 인식을 부추기게 된다.
- d. 이러한 지침을 채택하는 교단 교회들과 노회는 본 지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배상 책임문제에 대해 각자 법률 자문과 확인해야 한다. 본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교단 교회들과 그들이 속한 노회는 그들의 관할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법적 의무를 떠맡게 될 수도 있다. 소속 교회들과 노회를 섬기는 자문단의 책임문제도 법률 자문과 논의해야 한다. 자문단 구성을 맡는 안전한 교회 사역부 조정자를 임명하는 노회는 자문단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지침을 채택하는 교단 교회들과 노회들은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채택된 지침을 따르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잠재적인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e. 교단 직원은 자문단에 참여할 수 없다.

5.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취약한 성인일 경우에 대한 지침

- a.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이 교회 지도자에 의해 학대 당한 정황을 알게 되거나 혐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람은, 실제 학대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 또는 아동 보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대 혐의자가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관련 사안을 24 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과 아동보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b. 해당 당국에 신고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자는 피고소인의 교회에서 학대 혐의 문제를 다루도록 지정된 사람(이하 담당자)에게 혐의를 알린다. 신고자는 학대 혐의 및/또는 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는 학대로 추정되는 상황이 교회 건물 내에서 발생했거나 교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c. 담당자는 해당 교회의 1) 목사(미성년자와 해당 목사가 연루되지 않은 경우) 2) 리더십 팀 구성원(미성년자와 해당 팀원이 연루되지 않은 경우) 3) 노회의 안전한 교회 사역 코디네이터 4) 교회의 법률고문 5) 교회의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교회의 교인이 아닐 경우, 각 교회는 각자 담당자를 지정한다. 지정된 담당자들은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도록 한다.

교회는 사법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는 사법 당국이 학대 혐의자를 만나기 전에 혐의의 정황을 그 사람에게 밝혀서는 안 된다.

- d. 이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경우, 그 사실은 피고소인 교회의 치리회(당회/카운실/운영위원회 등)에 알려야 한다. 치리회는 지정된 교회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결과를 결정하도록 한다.
- e. 담당자가 (1) 당국이 해당 주장에 대해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거나, (2) 공식적인 혐의 제기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자는 학대 혐의자를 교회 치리회에 통보한다.
 - 1. 담당자는 주장의 정황과 알려진 모든 정보를 명시한 서면 문서를 치리회에 제출한다.
 - 2. 치리회는 피고소인에게 주장에 대해 응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3.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여, 치리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교회 내에서 피고소인과 모든 미성년자 사이의 접촉에 대한 감독
 - 교회 내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 교회 내의 모든 미성년자 사이의 접촉 금지
 - 해당되는 경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처없이 직책, 직위 또는 유급 직무 정지
- f. 담당자가 당국이 피고소인에게 형사 기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담당자는 이 내용을 학대 혐의가 있는 교회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담당자는 학대 혐의의 성격과 알려진 모든 정보를 명시한 서면 문서를 치리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치리회는 피고소인에게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 3.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여, 치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피고소인에게 교회에서 미성년자와의 접촉 금지;
 - 해당되는 경우, 기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처없이, 피고소인의 직책, 직위, 또는 유급 직무 정지.
- g.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리회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또는 기소 취하 등 결과에 관계없이 즉시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형사 기소가 취하되거나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치리회는 이전 조치를 철회할지 여부 및/또는 추가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h. 치리회가 이전에 해임하거나 정직시킨 피고소인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치리회는 경찰 및/또는 아동 보호 당국, 법률 자문, 아동 학대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피고소인을 이전의 지도자 위치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 i. 피고소인이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 치리회는 (1) 유죄 판결 받은 가해자(이하 '학대자')에게 추가 정직, 해임 또는 해고 조치를 취하거나, (2) 상황에 따라 학대자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j. (1)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를 자백한 교회 지도자, (2) 그러한 학대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지도자 (3) 또는 치리회가 그러한 학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법률 자문의 조언 없이 해임되거나 정직된 직위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 k. 교회 지도자가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책, 직위 또는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정직된 경우, 치리회는 교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인의 신원 및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는 목회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당시 알려진 사안에 대한 정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치리회는 교회 지도자가 학대자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법적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l. 학대 생존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교회 지도자가 학대자라고 결론지을 경우, 치리회는 서면으로 교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학대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당사자들의 신원과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는 목회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021년 8월 개정 by 안전한 교회 사역부 직원